



의안번호	제000호
회의 연월일	2025. 11. 17. (제576회 정기회의)

심의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제출연월일	2025. 11. 3.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계장, 운전면허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자의 운전적성을 판정하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주기 규정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이 경찰청장에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천적 신체장애 등 수시적성검사 수검 사유 발생부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개인정보 통보 주기가 불일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동일한 매월 1회로 단축함(안 제58조제2항)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매 분기”를 “매월”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 정보의 통보)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매 분기</u>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 정보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매월</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